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86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이양수・박덕흠・정희용

김소희 • 이인선 • 김승수

이종욱 • 김선교 • 권영진

배준영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안건조 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견이 큰 안건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제기됨. 이는 제1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가 같도록 구성하여 대화와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도록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

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 중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를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정하여"로 하 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당적을 취득 또는 이탈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 임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요구가 있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5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u>조정위</u>	<u>조정</u>		
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	합의로 정하여		
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후단	<u>이 경우 제1항에</u>		
<u>신설></u>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당적을 취득 또는		
	이탈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		
	한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		
	<u>될 수 없다.</u>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